

1. 개정이유

“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”는 내용의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국회(정기회) 제14차 본회의를 통과(2022.12.8.)하여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합 및 중앙회가 법 제141조의9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 수협은행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(안 제10조의4 신설)

“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”는 내용의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유사 입법례인 「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(농협은행의 우대조치)를 고려하여 동법 시행규칙 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

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로 하고,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수협은행의 우대조치)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5항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에 법 제141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,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10조의2(수협은행의 우대조치)</u> <u>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5항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에 법 제141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,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.</u>
<u>제10조의2·제10조의3</u> (생략)	<u>제10조의3·제10조의4</u> (현행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과 같음)